(全매체) 2014년 11월 20일(목) 18: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mba.go.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문의 :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과 원영준 과장(042-481-6810), 김용천 주무관(6812)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 개최

- 확인제도 기준, 운영방안 등에 대한 토론 및 각계 의견수렴 -

□ **이진복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를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11월 20일 개최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 '**30년 이상**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세대를 이어 **지속적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방안 및 확인기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기여**와 **사회적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 패널 : 강상훈 동양종합식품 대표, 김상근 ㈜상보 대표, 이경묵 서울대 교수, 남영호 건국대 교수, 조병선 숭실대 교수, 이용기 세종대 교수,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전무

○ **경제적 기여 측면에서는 ① 고용 창출・유지**(신규 고용창출, 장기 안정고용), **② 산업・기업성장**(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③ 재정적 기여도**(영업이익률, 법인세 성실납부), **④ 지속적 혁신역량**(연구개발투자비율) 및 **⑤ 재무적 안정성**(부채비율)을 고려하고,

○ **사회적 기여 평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명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이진복 의원**은 우리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창업 세대가 급격히 고령화**됨에 따라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유지 관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는 부의 대물림 확대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존경받는 기업문화의 저변 확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바람직한 롤 모델(Role Model)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한 '가족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 해외 장수기업 : 2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총 57개국에서 7,212개사
- **日 3,113개** (43.2%), **獨 1,563개** (21.7%), 佛 331개 (4.6%) 등의 순 ('11, 韓銀)

○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기업이 7개사(社)*에 불과**하여 장수기업군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하며,

* 두산 (1896), 동화약품 (1897), 몽고식품 (1905), 광장 (1911), 보진재 (1912) 등
* ’12년 538만개(개인기업 포함) 기업 중 **60년 이상 법인기업이 184개**에 불과

○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높은 수준의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면 시행령 개정 및 운영요령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 기준 및 운영계획(안)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김용천 주무관(☎ 042-481-6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공청회 자료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세부 확인기준 및 운영계획(안)

2014. 11. 20.

중 소 기 업 청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1

Ⅱ. 명문 장수기업 확인기준(안) ····· 2

1. 명문 장수기업 개념 및 핵심 지표 ····· 2

2. 핵심 지표별 세부 확인기준(안) ····· 3

Ⅲ. 확인제도 운영계획(안) ····· 9

1. 확인 절차 및 방법 ····· 9

2. 취소 사유 및 절차 ····· 10

Ⅳ. 향후 추진일정 ····· 11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 진 배 경

□ 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들이 각 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중추적 역할 수행**

* 외국의 경우 **2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총 **57개국에서 7,212개사**가 존재하며, **日 3,113개** (43.2%), **獨 1,563개** (21.7%), 佛 331개 (4.6%) 등의 순 ('11, 韓銀)

□ 우리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중소·중견 **창업세대의 급격한 고령화*** 문제와 **존경받는 기업문화 필요성** 등에 직면

* 60세이상 CEO비율(%): ('08)11.3 → ('09)12.4 → ('10)13.0 → ('11)13.8 → ('12)14.1

⇒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

그간의 추진경과

□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가업승계 활성화 및 장수기업 육성 의지**를 천명

* 중소기업인 대회 및 중견련 법정단체 출범식 행사시 VIP말씀 ('14.7)

□ **'14년 세법개정안*** **국회제출 및 『중기진흥법 개정안**』 발의** ('14.9)

* 명문 장수기업 세제우대 등 가업승계 지원 확대 포함

** 명문 장수기업 정의, 확인제도 운영 근거 등 (9.3 발의 → 11.13 산업위 상정)

□ **「명문(名門)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방안」 발표** (9.30, 중기청)

◇ **명문 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업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할 필요

Ⅱ. 명문 장수기업 확인기준(안)

1 명문 장수기업 개념 및 적용 범위

□ **(개념 정의)**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하면서, **세대를 이어 지속적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

* 가업(家業) : 대대로 물려받은(을) 집안의 생업으로, 장수기업의 토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제2조(정의) 10의2.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적용 범위)**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소상공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의 업종의 경우 : 5명미만

○ 원칙적으로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체를 모두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는 기업**이 해당

* 외감법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
기타 개인사업체 등 : 공인회계사 등의 공증 등을 거친 재무제표 등

○ 중소·중견기업 대상 확인기준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상공인**을 위해, **별도 확인제도 및 판단기준 개발**을 검토('15)

2 핵심 지표별 세부 확인기준(안)

명문(名門) 장수기업 개념 정의를 토대로 하여, **"名門"(① 경제적 기여, ② 사회적 기여)**과 **"長壽"(③ 업력 30년 이상)**을 핵심지표로 설정

1 경제적 기여 측면 : 최대 30점 (기본 25점 + 가점 5점)

경제적 기여는 **① 고용 창출·유지, ② 산업·기업 성장, ③ 재정적 기여도, ④ 지속 혁신역량, ⑤ 재무적 안정성**의 5개 기준으로 구체화

① (고용 창출·유지)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 유지 역량'을 검증

- **신규 고용창출** : 최근 **3년간 기업 고용평균 110%** 이상

  * 통계청의 전산업 연평균 정규직 근로자 증가율이 3.48%임을 감안하여, 적극적 고용확대를 위해 3년간 10%를 기준으로 함

- **장기 안정고용** : 최근 **7년간 기업 평균고용 100%** 이상

  * 개정 상증세법안의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가 7년임을 고려

⇒ **배점기준** : **최대 10점**이며, **신규 고용창출** 및 **장기 안정고용** **각각 최대 5점**(기본 4점 + 가점 1점)씩 부여

② (산업·기업 성장) '매출액 증가율' 및 '유형자산 증가율'로 확인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5년간 업종평균 이상**의 매출액 증가율

- **유형자산 증가율** : 최근 **5년간 업종평균 이상**의 유형자산 증가율

  * 한국의 경기순환주기가 49개월(韓銀)이고, 중장기 경영계획 주기가 5년임을 감안하여 세부기준 측정기간 기준을 5년으로 설정

⇒ **배점기준** : **최대 10점**이며, **매출액 증가율** 및 **유형자산 증가율** **각각 최대 5점**(기본 4점 + 가점 1점)씩 부여

⇒ **판단근거** : 산업·업종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韓銀 기업경영분석 산업별(중분류) 통계**를 준거기준으로 활용

③ **(재정적 기여도)** '영업이익률'과 '법인세 납부실적'으로 판단

- **영업이익률** : 최근 **3년 연속 영업이익율 0% 이상**

* 경기순환에 따른 산업전반의 불황기를 고려, 연속기준으로 3년간을 평가

- **법인세 납부실적** : 최근 **5년간 법인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 **판단기준** : **필수요건**으로서, **미충족시 탈락**

④ **(지속 혁신역량)**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노력을 검증

- **R&D투자 비중** : 최근 **5년간 매출액대비 R&D투자 비중 평균 ≥ 최근 5년간 업종별 평균**

⇒ **배점기준** : **최대 10점**이며, **기본 8점 + 가점 2점** 부여
(단, 업종별 통계는 韓銀 기업경영분석 활용)

⑤ **(재무적 안정성)** 최근 **5년간 평균 부채비율 150% 이하** (필수요건)

*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안정적 대응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검증
- 최근 5년간 전산업 평균 부채비율(138%) 고려(韓銀 기업경영분석)

2 사회적 기여 측면 : 최대 30점

중소·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행 수준을 평가**하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기여도를 평가

○ **(평가기준)**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기준 도출을 위해,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표준인 ISO 26000의 7대 주제*를 기반**으로 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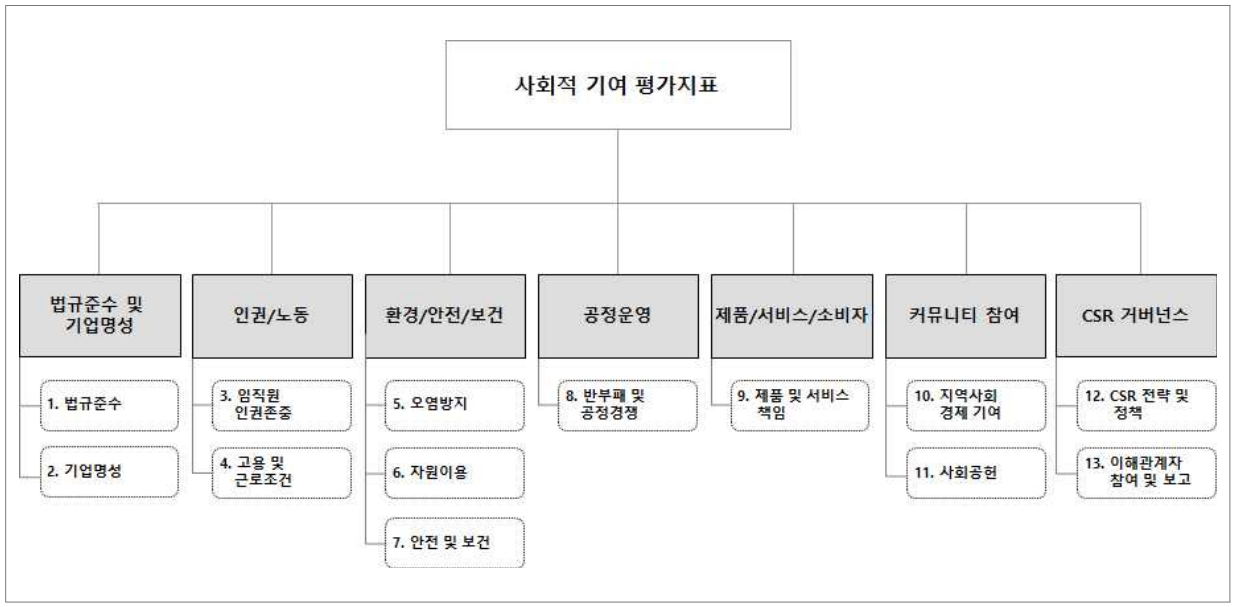
* ISO 26000 7대 핵심주제 :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커뮤니티 참여 및 개발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가이드라인,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등 주요 글로벌 기업경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보완

- 명문 장수기업 확인을 위한 '사회적 기여 평가모델'은 **7대 분야, 13개 지표*, 34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 13개 지표 : 법규준수・기업명성(2), 인권・노동(2), 환경・안전・보건(3), 공정운영(1), 제품・서비스・소비자(1), 커뮤니티 참여(2), CSR 거버넌스(2)

사회적 기여 평가모델 체계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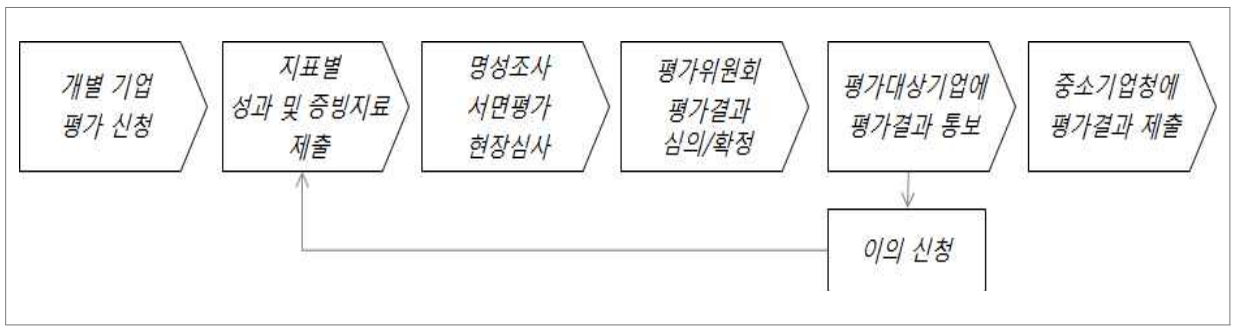


○ **(평가절차)** 사회적 책임 **전문기관***을 통해 "서면평가 → 현장심사 → 명성조사"를 거쳐,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확정

*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5)

** 인권・노동, 환경・안전・보건, 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사회적 기여 평가절차 흐름도 (안)



○ **(배점기준 및 적용)** 총 **34개 항목**에 대한 합산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점수에 따라 **10개의 평가등급 (Rating)** 부여

사회적 기여 판단점수별 등급 및 적용(안)

등급	점수 구간	적용(안)
A^+	**평가점수 95점 이상**	최우수 등급으로, 명문 장수기업 확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 부여
A	**평가점수 90점 이상**	
A^-	**평가점수 85점 이상**	
B^+	평가점수 80점 이상	우수 등급으로 확인 예비기업 자격을 부여하고, 1년 이내 1회에 한해 재평가 신청 가능
B	평가점수 75점 이상	
B^-	평가점수 70점 이상	
C^+	평가점수 65점 이상	보통 등급으로 2년 이후 재평가 신청 가능
C	평가점수 60점 이상	
C^-	평가점수 55점 이상	
D	평가점수 55점 미만	기준미달 등급 → 3년 이내 재평가 신청 불가

- **A^- 이상** 등급(85점 이상)에 한해 명문 장수기업 **확인자격을 부여**하고, 획득 점수는 **사회적 기여 점수로 변환(30점 만점)**하여 반영

* 예시 : 판단점수가 **85점**일 경우 →
명문 장수기업 '사회적 기여' 점수 : (85X30)/100 = **25.5점**

3 30년 이상의 가업 : 최대 40점 (기본 30점 + 가점 10점)

○ **(家業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우호지분이 50% 이상(상장 30%) 보유할 것(상증세법 §18②)

* '1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요건 10년 → 5년으로 완화

○ **(업력 산정)** 창업한 날*로부터 명문 장수기업 확인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함(휴업기간 제외)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의 회사설립일

- **(개인 → 법인 전환)**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 시점**을 업력산정 기산점으로 **인정**

①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②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 양수·도 계약 포함)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있을 것
③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④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회사 분할·합병)** 분할시 존속하는 대표회사의 업력만 인정, 합병시 존속하는 회사의 성립일부터 업력 산정

○ **(배점 기준)** 최대 **40점 만점**이며,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업력 30년***일 경우 **기본점수 30점** 부여

* '12년 활동기업(개인기업 포함) 총 538만개 중 30년 이상은 **1.4%**(7.4만개)

- **30년 이상**의 경우 **추가 3년당 1점 가점** 부여(61년 이상 40점 상한)

가업 기간별 배점기준(안)

업 력(년)	30	31~33	34~36	…	55~57	58~60	61 이상
배 점(점)	30	31	32	…	39	40	40.0

4 추가 가점 및 확인 기준

○ **(추가 가점)** '장기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노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추가 가점제도** 마련(최대 6점)

- **근로자 장기근속(3점)** : 장기적 인적자원 양성을 유도하기위해, 정규직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를 산정하여 기간별로 가점 부여

구 간	7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15년 이하	15년 초과
가 점	1점	2점	3점

- **일자리정책 참여(3점)** : 정부의 일자리 창출·유지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정책별로 1~2점의 가점부여(중복해당시 3점 상한)

가 점	2점	1점
정책명	•수도권외 지방 소재 기업 •우리사주조합 운영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참여기업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확인 기준) 필수 요건** 및 항목별 **최저기준을 통과한 기업**으로서, 적격 기준점수(85점) 이상 획득하면 명문 장수기업 확인서 부여

참고 명문 장수기업 세부 확인기준(안) 개요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지 표
(배점)</th><th>세부기준(안)</th><th>비 고</th></tr>
<tr><td rowspan="11">명문
(60)</td><td rowspan="5">경제적 기여
(30)</td><td>고용기여
(10)</td><td>• 신규 고용창출 : 최 3년간 평균고용 110%이상 유지(10% 창출)
• 장기 고용유지 : 최근 7년간 평균고용 100%이상 유지</td><td>* 상증세법상 '가업' 사후관리 조건 적용
* 정규근로자 기준</td></tr>
<tr><td>산업성장
(10)</td><td>• 매출액 증가율 : 최근 5년 평균 ≥ 업종별 5년 평균
• 유형자산 증가율 : 최근 5년 평균 ≥ 업종별 5년 평균</td><td>* 기업경영분석(한은) 업종별 평균 기준</td></tr>
<tr><td>재정기여
(필수)</td><td>• 영업이익률 : 최근 3년 연속 이익률 ≥ 0%
• 법인세 납부실적 : 최근 5년 연속 납부 및 체납 사실 없을 것</td><td>* 국세청 협력</td></tr>
<tr><td>혁신역량
(10)</td><td>•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최근 5년 평균 ≥ 업종별 5년 평균</td><td>* 기업경영분석(한은) 업종별 평균 기준</td></tr>
<tr><td>재무건전성
(필수)</td><td>• 부채비율 : 최근 5년간 평균 150% 이하</td><td>* 최근 5년간 전산업 평균 부채비율 : 138%</td></tr>
<tr><td rowspan="6">사회적 기여
(30)</td><td>법규준수 및 기업명성
(필수)</td><td>• 법규준수 : 최근 3년간 관련 법규위반으로 법원 유죄판결 0건, 정부포상 추천제한 규정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 기업명성 : 이해관계자 리서치(Multi-Stakeholder Engagement) 결과 기업만족도 및 호감도 70점 이상</td><td rowspan="6">* CSR 사후관리
- 유효기간 2년
- 2년마다 재진단을 통해 유지 점검</td></tr>
<tr><td>인권/노동
(5)</td><td>• 임직원 인권존중 : 인권 행동지침, 고충처리제도 등 보유여부
• 고용 및 근로조건 : 노사관계 제도화, 인재개발 노력 등</td></tr>
<tr><td>환경/안전/보건 (5)</td><td>• 오염방지 : 대기·수질오염물질 감축, 유해화학물질 사용 감축 등
• 자원이용 : 원부자재, 에너지, 온실가스 사용 감축 등
• 안전 및 보건 : 산업재해율, 안전교육 프로그램 시행여부</td></tr>
<tr><td>공정운영
(5)</td><td>• 반부패 및 공정경쟁 : 부패방지 및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여부</td></tr>
<tr><td>제품/서비스/소비자(5)</td><td>• 제품 및 서비스 책임 : 제품서비스 안전,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정책 및 제도 유무</td></tr>
<tr><td>커뮤니티 참여(5)</td><td>• 지역사회 경제 기여 : 지역업체 조달/구매비율, 지역사회 고용창출
• 사회공헌 :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 비용, 임직원 봉사활동 시간</td></tr>
<tr><td>CSR 거버넌스(5)</td><td>• CSR 전략 및 정책 : CSR 전략체계, 추진의지, 성과관리 여부
• 이해관계자 참여·보고 : 이해관계 반영 프로세스 및 성과 공개</td></tr>
<tr><td>장수
(40)</td><td colspan="2">가업기간
(40)</td><td>• 창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 가업 요건을 만족하고, 1·2세대(배우자 포함) 합계 30년 이상
* (가업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우호지분이 50% 이상(상장 30%) 보유할 것</td><td>* 상증세법상 '가업' 요건 일부 적용
* 3년당 1점 가점</td></tr>
<tr><td>가점</td><td colspan="2">일자리창출 기여
(+6)</td><td>• 정규근로자의 장기근속 연수에 따라 가점 부여(최대 3점)
* 정규근로자 평균 재직 (20년) 1점, (25년) 2점, (30년이상) 3점
• 일자리창출 정책참여 가점 부여(최대 3점)
<table>
<tr><th>2점</th><th>1점</th></tr>
<tr><td>•수도권외 지방 소재 기업
•우리사주조합 운영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참여기업</td><td>•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td></tr>
</table></td><td></td></tr>
</table>

필수 요건 및 항목별 최저기준을 통과하고, 전체 106점 (가점포함) 중에서 적격 기준점수 (85점) 이상 획득하면 명문 장수기업 확인서 부여

Ⅲ. 확인제도 운영계획(안)

1 확인 절차 및 방법

① 신청·접수	② 요건 확인 및 질적 검증	③ 심의·확정 및 확인서 교부	④ 사후 관리
기업 → 센터	행정기관·지방청	중기청	행정기관·중기청

1 신청 및 접수 (중소·중견기업 → 지원센터 → 중기청)

○ 명문 장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서**와 확인요건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센터**'로 **신청**

*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은 제외 → '15년중 **별도의 평가모델** 개발 검토

** 지원센터 : 중소기업은 가업승계지원센터(中企중앙회),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

○ 지원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전담직원을 배치** ('15.상)

2 요건 확인 및 질적 검증 (행정기관 및 지방중기청)

○ **(요건 확인)** 신청 기업의 **계량적 실적, 성과 등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확인기준 부합여부를 검증** (행정기관*, 지방중기청)

* 관련 행정기관은 노동, 환경, 안전 등에 대한 법령준수 여부를 검토

○ **(질적 검증)** 기업 **현장방문 및 인터뷰,** 지역사회 **평판 조사** 등을 거쳐 **부적격 기업 배제** (지방중기청, 지자체)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준해 기업의 평판을 조사

- 범죄경력, 산재율, 불공정행위(기업체·임원), 지역경제 기여도 평판(지방중기청, 산단공 등)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지자체)가 추천

3 심의·확정 및 확인서 교부 (중소기업청)

○ **(심의·확정)** 요건 확인 및 질적 검증을 통과한 기업은 민·관 합동의 **"(가칭) 명문 장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운영(안) : **위원장(중기청장)**을 포함한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 업계·학계 등의 명망 높은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 분기별 개최 원칙**

○ **(확인서 교부)** 확정된 기업에게는 "명문 장수기업"임을 증빙하는 중기청장 명의의 **'확인서' 교부 및 '기업 현판*'** 제공

* 명문 장수기업의 특성을 살린 **로고 등을 별도로 디자인**하여 제작

④ **사후관리 원칙 및 효력기간** (행정기관 및 중기청)

○ **(사후관리 원칙)** 명문 장수기업이 일반 중소·중견기업의 **롤 모델(Role Model)**인 점을 고려, **2년에 한 번씩 자격심사** 실시

* 사회적 물의는 상시 모니터링하고, 물의 발생시 지자체 협의 후 청문 진행 (2년 단위로 진행되는 평판조사를 통해 발생위험 관리)

○ **(확인 효력기간)** 원칙적으로 확인의 **효력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확인서 재발급**

2 취소 사유 및 절차

※ 중기진흥법 개정안 제62조의6에 반영 (9.3, 이진복의원 대표발의)

□ **(취소 사유)** 명문 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이후 **다음의 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확인을 취소**할 수 있음

명문 장수기업 확인 취소사유 (안)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② 2년 이후 재평가 시 명문 장수기업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③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경우

④ 현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자체가 추천을 철회하는 경우

가. 회계부정, 차명주식 거래, 불공정거래 행위 등 기업경영상의 심각한 부당행위로 인해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

나. 폭력행위, 뺑소니 등 기업주 개인의 형사상 범법행위 및 기업주 가족간 재산상의 분쟁 등 명문장수기업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 기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

□ **(취소 절차)** 취소요건 확정전에 해당기업에게 **이의신청 및 청문 기회를 부여**하고, **"(가칭) 취소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명문 장수기업 **확인 취소가 확정**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중기청)

Ⅳ. 향후 추진일정

□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14.11월)

* 이진복의원실 · 중기청 공동개최, 중소 · 중견기업계 및 전문가 참여

□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14.12월) → 동법 시행령 개정 ('15.3월)

○ **중견기업** 확인을 위해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 (~'15.상)

*『중소기업진흥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특례규정 신설

□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 추진**

○ 명문 장수기업 확인 운영요령 제정 및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관계자 합동 워크숍 ('15.4월)

○ 명문 장수기업 확인 제도 **시행공고 및 설명회 개최** ('15.5월)

< 붙 임 > 1. 국내·외 장수기업 현황
2. 외국 장수기업 주요사례 및 성공요인
3. 업력별 기업현황 분석 (전산업)

참고1 국내·외 장수기업 현황

□ 장수기업의 개념

○ **'장수기업'**은 통상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기업」**을 의미하지만,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경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

○ 일본은 장수기업을 **「100년 이상 존속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며, 선진국에는 **200년 이상기업도 상당수** 존재

* 일본에서는 100년이상 기업을 '시니세(老舗)'라 하며, "前의 사람이 하고 있던 것을 동일하게 한다는 의미로 선조의 가업을 지속하는 것"을 뜻함
- 1천년 이상 7개, 500년 이상 39개, 100년 이상 2만2,219개 (제국데이터뱅크, '10)

□ 해외 장수기업 현황

○ 창업 **2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총 **57개국**에 **7,212개사**가 있으며, 日 **3,113개** (43.2%), 獨 **1,563개** (21.7%), 佛 331개 (4.6%) 등의 順

구 분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기타	합계
기업수(개)	3,113	1,563	331	315	292	1,598	7,212
비 중(%)	43.2%	21.7%	4.6%	4.4%	4.0%	22.2%	100.0%

* 출처 : 일본의 가업승계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11)

□ 국내 장수기업 현황

○ **한국**의 경우 근대적 기업 역사가 짧아 **100년 이상** 기업은 두산 등 **7개사**에 불과하고, **60년 이상** 법인기업도 **184개사 수준**

* 두산(1896), 동화약품(1897), 신한銀(1897), 우리銀(1899), 몽고식품(1905), 광장(1911), 보진재(1912)

< 국내 60년 이상 법인기업의 업종별 분포 >

구 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	기타	합계
기업수(개)	38	14	17	35	1	79	184
비 중(%)	20.7	7.6	9.2	19.0	0.5	42.9	100.0

참고2 외국 장수기업 주요사례 및 성공요인

□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기업'**

○ 독일의 히든챔피언인 **클루스 (Cloos)**는 약 100년 가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 2만명 도시 인구의 10%를 부양**

○ 미국의 **허쉬 (Hershey)**의 경우, 이익금을 불우아동 교육사업에 환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사례**를 보여줌

◈ **Cloos (1919년 설립)** : 용접로봇 생산, 직원 750명, Carl Cloose (3세 경영)
- 독일의 소도시 하이거(Haiger)에 본사가 입지해 있으며, 대학교육 연계, 훈련지원 등으로 3대가 함께 일하는 직원이 많음

◈ **Hershey (1894년 설립)** : 초콜렛 생산, 매출액 60억불, 직원 1,400명
- 이익금은 Milton Hershey School (1909년 창업자가 설립한 고아들을 위한 학교), M.S. Hershey Foundation (지역사회 교육 및 발전사업)에 환원
- Hershey Town이 관광명소화, 2002년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Hershey Trust가 재무구조 다각화를 위하여 지분매각 추진시 지역주민이 반대

□ **외국 장수기업의 성공요인**

① 선진국의 장수기업은 **높은 성과를 내는 '가족기업'**이 많으며, 가족기업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이를 뒷받침**

* 히든챔피언 (2,734개, 평균업력 66년, 100년 이상 38%)의 2/3가 가족기업

- 독일에서는 **가업승계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자녀가 상속하거나, 자녀 승계가 곤란한 경우 **신탁재단* 형태로 기업활동 지속**

*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해 사업체 해체를 방지하고, **가업 보전과 공익성의 균형** 유지 → Volkswagen, Bosch 등 약 14,400개 신탁재단 존재 ('07)

② **히든챔피언**은 자질 있는 후보자를 발굴하여, 비교적 **젊은 나이*에 최고경영자에 임명 (기업지분 부여)**하고 **창업주의 경영철학 승계**

* CEO 취임연령 : 세계증시상장 평균 52.2세, 히든챔피언 30대~40대 초반

③ **경영진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집중과 세계화'의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여, 시장지배 및 지속적 생존에 성공

* CEO 평균재직 ('10) : 히든챔피언 20년, 세계증시상장 6.6년, 독일어권 6.1년

참고3 업력별 기업현황 분석 (전산업)

◇ **'장수기업' 개념 정립**을 위해 「기업생멸 행정통계*」 및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를 재구성하여 **업력별 기업현황 최초 분석**

* 국내의 영리기업 중 '매출액 있거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을 대상
- 법인은 지사를 본사에 포함, 개인사업자는 각각 개인기업으로 간주

** 법인세를 납부한 전체법인 중 비영리 성격의 법인(의료, 학교 등)을 제외

□ 업력별 활동기업수

○ '12년 전체 활동기업 **총 5,379,538개**며, 업력 **30년 이상**은 **73,637개**로 전체의 **1.4%** 수준이고, **60년 이상은 284개** (개인 100개 / 법인 184개)

* 상증세법 가업 조건(10년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은 전체의 26.5% 수준

(단위 : 개, %)

구 분	합 계	5년미만	5~9년	10~19년	20~29년	30~59년	60년이상
소 계	5,379,538	2,691,710	1,262,200	1,077,430	274,561	73,353	284
비중	100.0	50.0	23.5	20.0	5.1	1.4	0.0
개 인	4,925,810 (91.6)	2,486,026 (92.4)	1,151,969 (91.3)	967,116 (89.8)	256,030 (93.3)	64,569 (88.0)	100 **(35.2)**
법 인	453,728 (8.4)	205,684 (7.6)	110,231 (8.7)	110,314 (10.2)	18,531 (6.7)	8,784 (12.0)	184 **(64.8)**

□ 대표자 연령별 기업수

○ '12년 활동기업의 대표자는 **40대·50대가** 각각 **30.4%, 32.3%**며, **60대부터 급격히 축소**되어 **60세 이상**은 **20.6%**에 불과

* 노쇠화에 따라 **60세 이후 사업승계·정리(청산)·퇴직**하는 것으로 추정

(단위 : 개, %)

구 분	합 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세이상
소 계	5,379,538	125,698	759,615	1,634,442	1,737,728	471,023	304,447	334,410
비중	100.0	2.3	14.1	30.4	32.3	**8.8**	**5.7**	**6.2**
개 인	4,925,810	120,631	708,422	1,469,266	1,576,149	436,983	286,675	320,133
법 인	453,728	5,067	51,193	165,176	161,579	34,040	17,772	14,277

□ 영리법인기업체 업력별 주요현황 ('12년, 478,024개)

○ 업력 **30년 이상 기업수 비중은 2.1%**에 불과하나, **자산의 49.2%, 자본의 45.4%, 매출액의 38.7%** 등 전체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

- 제조, 도소매 등 5개 주요산업의 경우, 업력 30년 이상 기업수 비중은 2.2%, 자산 38.1%, 자본 47.5%, 매출액 35.9% 등 기여

○ **업력** 증가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도 증가하여 **재무 안정성 증가**

* (5~9년) 30.7 → (10~19년) 32.8 → (20~29년) 31.3 → (30~39년) 32.7 → (40~49년) 38.2

(단위 : 개, 십억원, %, 회)

구 분		기업수		자 산		자 본			매출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자기자본비율		구성비
전산업		478,024	100.0	7,244,383	100.0	2,009,431	100.0	27.7	4,089,554	100.0
	5년미만	192,763	40.3	1,009,576	13.9	243,535	12.1	24.1	471,167	11.5
	5~9년	127,282	26.6	614,326	8.5	188,638	9.4	30.7	457,965	11.2
	10~19년	126,879	26.5	1,373,791	19.0	451,129	22.5	32.8	1,064,786	26.0
	20~29년	21,085	4.4	680,598	9.4	213,049	10.6	31.3	513,730	12.6
	30~39년	6,811	1.4	733,579	10.1	239,636	11.9	32.7	510,536	12.5
	40~49년	2,316	0.5	997,698	13.8	381,364	19.0	38.2	565,967	13.8
	50~59년	653	0.1	1,008,755	13.9[1)]	164,726	8.2	16.3[1)]	294,263	7.2
	60년이상	235	0.0	826,060	11.4[1)]	127,355	6.3	15.4[1)]	211,140	5.2
주요산업 • 제조 • 건설 • 도소매 • 운수 • 숙박음식		330,597	100.0	2,689,438	100.0	1,182,477	100.0	44.0	2,972,316	100.0
	5년미만	122,052	36.9	251,105	9.3	96,659	8.2	38.5	354,369	11.9
	5~9년	86,984	26.3	346,926	12.9	108,953	9.2	31.4	367,532	12.4
	10~19년	96,995	29.3	688,789	25.6	282,615	23.9	41.0	833,658	28.0
	20~29년	16,911	5.1	296,282	11.0	133,896	11.3	45.2	352,335	11.9
	30~39년	5,362	1.6	338,446	12.6	162,610	13.8	48.0	341,872	11.5
	40~49년	1,666	0.5	528,265	19.6	308,566	26.1	58.4	495,712	16.7
	50~59년	490	0.1	132,285	4.9	32,671	2.8	24.7[2)]	129,671	4.4
	60년이상	137	0.0	107,340	4.0	56,505	4.8	52.6	97,167	3.3

* 주1) 50년 이상 구간에 금융업의 자산 42.6%, 부채43.9% 집중에 따른 영향

* 주2) 건설업・도소매업 자본감소(부채감소보다 자산감소가 큼) 영향

□ 정책적 시사점

○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지속 성장과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투자・자본축적・시장창출 등 **전체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

○ **'히든 챔피언'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 다년간 축적된 기업 효율을 소멸시키지 않고 승계・재활용이 가능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필요

* 회생・퇴출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06년 6.3조원으로 추정 (중기연구원)